

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에 민원 접수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읍.면.동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 - 3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2조 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 - 3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영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 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에 민원 접수된 사항</u></p>